# BLAZA 전축마당 참고서 report

APEC Architect Project 제2차 중앙이사회 참가 보고서

### ■ 서언

제2차 APEC Architect Project 중앙이사회가 2006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CAM-SAM(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참가국은 이사국 12개국과 이번에 이사국으로 신청한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으로 호 주 3명, 캐나다 2명, 중국 6명, 홍콩 9명, 일본 6 명, 한국 6명, 말레이시아 2명, 멕시코 10명, 뉴질 랜드 4명, 필리핀 4명, 싱가포르 3명, 대만(사무국) 15명, 태국 5명, 미국 7명 등 82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아카시아 차기회장이며 본 협회의 부회장인 이근창 위원, 본 협회 국제위원회 전문위 원 김지덕(APEC Architect 위원회 부위원장), 대 한건축학회 이사 이상림 위원, 새건협 부회장 이필 훈 위원, 건교부 건축팀 문석준 사무관과 그리고 필자가 간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총 6명이 참석 했다.

## ■ 주요 안건

이번 중앙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크게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1회 중앙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과 신임 이사국의 승인. 둘째, 지난 1년 동안의 각이사국의 경과보고, 셋째, 중앙이사회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한 보고 및 분담 방법에 대한 협의. 넷째, APEC Architect 등록증과 ID 카드 제작에 관한건. 다섯째, 각국의 APEC Architect에 대한 상호인증의 조건 검토 내용. 여섯째, 차기 사무국과 중

앙이사회 개최국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협 조적인 이사국에 대한 제제내용과 본회의에서 논 의된 내용의 검토 등이다.

#### ■ 회의내용 요약

- 신입 이사국의 승인: 우선 중앙이사회 이전에 이사국으로 신청한 나라는 싱가포르와 한국 2개 국인데, 싱가포르의 경우엔 3년 전에 이미 제출한 내용들에 의해 합의가 쉽게 이루어져 정회원국의 승인을 득한 반면, 한국은 자문역으로 있는호주의 Helen Fisher가 뒤늦게 요청한 추가사항에 대한 답과 수정한 survey application form을 제출한 후 일본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이사국으로서 승인을 득했다.
- 각 국의 심사위원회의 경과보고: 지난 제 1회 중 앙이사회 이후의 각 국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우선 아직 웹 사이트 구성이 안 된 이사국이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등 4개국 이며, 현재까지 각 국의 APEC Architect의 등록부에 등록된 건축사 수는 일본이 가장 많은 324명이며, 다음이 중국으로 72명, 홍콩이 21명, 미국이 13명, 말레이시아가 6명, 캐나다 3명, 호주 2명 등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APEC Architect 한국위원회설립 후 네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하여 준비를해온 결과 6월1일부터 APEC Architect의 등록신청을 개시하도록 공고되었으며, 세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APEC Architect 등록을 위한 서류심사를 거쳐 돌아오는 9월17일 APEC Architect Project의 1주기를 맞아 한국 APEC Architect의 등록개시를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중앙이사회 사무국의 운영경비 분담: 중앙이사회의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몇 가지 선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미국,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필리핀 4개국이 별도로 협의하여 기준을 만든 후 분담방안을 10월까지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이기준이 통과되면 일부의 운영비를 이시국으로서분당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APEC Architect 등록증과 ID 카드의 제작: APEC Architect의 등록증과 ID 카드의 제작에

대한 협의에서는 일본은 이미 300장이 넘는 등록증을 기존의 등록증 형태로 발급한 상태이 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최종적으로 재검토해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 상호 인증 체계 : APEC Architect가 다른 이 사국에서 활동을 원할 때 해당국에서 APEC Architect를 위한 상호인증 체계에 대한 논의 에서는 첫째, 특정의 산정방법(경력 및 작품심 사에 거친 인터뷰 등의 방법)에 의한 인증, 둘 째 포괄적인 등록시험에 의한 자격부여 그리 고 셋째로 해당국에서의 거주기간 및 경력기 간에 의한 인증 등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논의 중 중국과 한국 등의 이사국이 상호인증의 조 건으로 국내 건축사와의 협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는 상호인 증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 측으로 밀려 제외되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 시국이 첫째의 특정의 산정방법에 의한 상호 인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일 부 이사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 하지는 못했지만 곧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 여 공고하는 것에 합의했다.
- APEC Architect Project의 홍보: 각 국에 서의 등록과 증서에 관련된 결정사항들은 각 국의 건축위원회의 웹 사이트에 표준양식으로 기록해야하며 중앙이사회의 웹사이트에 상호 인증체계로서 요약될 수 있도록 합의 했다. 또한 각 국의 APEC 심사위원회는 각 국의 건축단체가 APEC Architect에 대해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자료를 회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중앙이사회의 사무국은 APEC Architect Project의 활동사항과 이점을 UIA와 APEC의 HRDWG(인력개발 실무그룹)에 통보하도록 합의했다.
- 비협조 이사국에 대한 제재방침: 이번 중앙이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거리는 비협조적 인 이사국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한 논의였다. 미국과 호주 등의 나라에서 제안한 제재내용 을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웹 사이트를 만들 지 못하거나 요구된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일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

거나, 더 심한 경우 교육조건 등의 변화가 APEC Architect의 자격조건에 심각하게 미달될 경우 이사국의 자격을 박탈하고, 조건이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경우에 한해 다시 이사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제를 논의 중 태국의 대표단은 안건에 없었던 의제임을 주지시키고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회의장을 떠나는 해프 당도 있었다.

• 차기 사무국과 중앙이사회 개최국 선정 : 차기 사무국에 대한 지정은 자원하는 나라가 없어 서 모든 이사국이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 기로 했다. 한국도 이런 원칙에 의해 사무국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기 사무 국은 멕시코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또한 2년 뒤의 제3차 중앙이사회도 미주가 아닌 다른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른 대륙에서의 자원국이 없어 캐나다 벤쿠 버에서 2008년 8월중에 하기로 결정했다.

# ■ 끝맺기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우리나라가 늦게 참 여하기 시작했지만 단 제2차의 중앙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승인을 득하고, 국제상호인증의 첫 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입지를 마 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중앙이사회에서 받은 느낌은 APEC Architect Project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고있고, 이들 나라의 시장개척을 위한 상호인증의의지가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는 현재세계 각 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이 힘을 내세워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양상과비슷하게 느껴진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의 선 진국들은 건축사 관리주체인 정부기관이나 등록 원의 회장단 또는 관리자들과 건축사 관련 협회 의 회장단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건교부가 우리 협회에 위임하 여 구성한 APEC Architect Project 한국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어 논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도한계로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상호인증의 체계를 가닥잡고 미국 등의 이사국의 압력으로 이 체계에 비협조적인 이사국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던지 아니면 제외되던지 하는 양단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국은 이미 WTO에 의해 건축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개방되어 있고, 이미 관 공서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축사와의 검업 조건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외국건축사의 국내에서의 실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의 건축시장은 극히 제한적이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세계로의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대국과의 시장 경쟁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가능한 경쟁 기반 구축은 이런 국제기구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 건축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많은 APEC Architect를 배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으로의 UIA의 상호인증 논의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거나 최소한 논의의가능성을 남겨 놓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세계 건축계에서의 상호인증 논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고, 제3세계로 시장을 확보해 나아가고 해외에서 밀려들어올 수 있는 선진국의 건축사와 경쟁할 수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APEC Architect Project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한국 APEC Architect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건설교통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건축 관련 단체들의 단합된 노력들을기대해 본다. (2006년 5월31일)

(글: 신춘규 / 우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 장, APEC Architect 한국위원회 간사)

0606 대한건축사협회 **109**